

2021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용

자격시험의 모든 것, 더존지식서비스센터
<http://license.duzontv.com>

국가기술훈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3회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해설서

1. 다음 재무제표의 의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재무제표는 기업의 거래를 측정, 기록 및 요약하여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이다.
-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결정시 기업의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 ④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요약되어 있으며, 재무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금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① 기중거래가 발생기준에 따라 기록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다.
- ② 완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개략적인 재무성과만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다.
- ③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회계기록에 오류가 없는지를 대차계정 일치의 여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④ 자산 + 비용 = 부채 + 자본으로 정리한다.

- ① 주석은 추정 불확실성 등의 기타 원천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②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 ③ 주석에는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 ④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이다.

4. 다음은 (주)금고의 2013년 말 자산실사 결과자료의 일부이다. 201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은? 단, 아래자료 이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없다.

가. 통화 ₩100	나. 배당금통지표 ₩50	다. 받을어음 ₩150
라. 우표 ₩50	마. 보통예금 ₩250	바. 차용증서 ₩150
사. 지급기일 도래 전 사채이자표 ₩250		
아. 6개월 만기양도성예금증서(2013.8.1 발행, 11.30 취득)		₩150

- [illegible]

5. 다음 중 상공상사의 2013년 12월 31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상공상사는 2012년 4월 1일 주권상장법인인 (주)하나산업의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에 장기보유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주)하나산업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2012년 말 ₩8,300이었고, 2013년 현재 ₩9,200이다. 상공상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 | | | |
|------------------------|----------------------------|--|
| ①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
| ②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90,000 | |
| ③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7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
| ④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7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

6. 다음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② 원가모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후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④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 발생하는 공정가치변동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7. 다음의 거래와 관련하여 분개를 할 때 거래의 8요소의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건물(장부금액 ₩15,000)을 ₩20,000에 매각하였다.
 나. 청소용역을 제공한 대가 중 ₩20,000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00은 아직 받지 않았다.
 다. 차입금 ₩20,000을 모두 출자전환하였다. 거래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후 즉시 주주에게 현금 ₩20,000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 ① 가. 거래 :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 ② 나. 거래 :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 ③ 다. 거래 :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 ④ 라. 거래 :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8.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에

가. 외상매출금	₩1,000,000	나. 받을어음(상품판매)	₩100,000
다. 대여금	₩200,000	라. 타인발행수표	₩50,000
마. 장기받을어음	₩150,000	바.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00,000

해당하는 매출채권의 순액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 | |
|--------------|--------------|
| ① ₩1,000,000 | ② ₩1,050,000 |
| ③ ₩1,200,000 | ④ ₩1,250,000 |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가액	₩64,000
부가가치세	₩6,400
합 계	₩70,400

① ₩64,000 ② ₩41,050
③ ₩29,350 ④ ₩6,400

가. 기초재고	₩80,000	나. 당기매입	₩600,000
다. 매입부대원가	₩19,000	라. 판매관련 보관료	₩1,000
마. 매입할인	₩2,000	바. 매입환출	₩15,000
사. 기말재고	₩85,000		

- ①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 ②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③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④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14.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에 의해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자기주식 계정에 기록한다.
- ③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 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 ④ 자기주식은 자본계정에 보고된다.

15. 다음은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은 전일제나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의 종업원은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한다.
- ②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 ③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명목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 ④ 해고급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 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으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16. 2012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200,000이고 2013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000인 경우 2013년도 법인세비용이 ₩1,000,000일 때 미지급법인세는 얼마인가?

- ① ₩1,000,000 ② ₩900,000
③ ₩800,000 ④ ₩700,000

17. 다음 전기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것도 오류수정의 예이다.
- ②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중요한 전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전기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8. 다음 중 현금흐름표 작성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 ① 유상증자 ② 장기차입금의 차입
③ 자기주식의 처분 ④ 토지의 구입

19. 다음 보기의 기업들 중 당기순이익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기업	자산총액평균	매출순이익률	자산회전율
갑	2,000억	15%	2.0
을	2,000억	10%	2.5
병	3,000억	15%	1.0
정	3,000억	10%	1.5

20. 12월 결산법인인 (주)상공은 2013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와 업무용차량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1일에 리스보증금으로 ₩200,000을 예치하고, 운용리스계약기간을 3년, 최소리스료는 매년 12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상공의 자금사정으로 최소리스료는 2013년 ₩100,000, 2014년 ₩200,000, 2015년 ₩300,000, 총 ₩6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3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운용리스료는 얼마인가? 다만,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① ₩100,000 | ② ₩200,000 |
| ③ ₩300,000 | ④ ₩400,000 |

32. (주)대한의 제16기 영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제16기 중 고정비는 얼마인가?

가. 매출액 : ₩1,500,000 나. 제품단위당 판매가격 : ₩200
다. 변동비율 : 80% 라. 법인세율 : 20%
마. 당기순이익 : ₩100,000

- ① ₩200,000 ② ₩185,000
③ ₩175,000 ④ ₩160,000

33.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50,000이며, 고정비는 ₩50,000이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계산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헌이익률은 20%이다.
- ② 단위당 변동비가 ₩10이라면 단위당 판매가격은 ₩12.5이다.
- ③ 총 30,000단위가 판매(단위당 판매가격 ₩12.5 가정)되었을 때 안전한계는 ₩125,000이다.
- ④ 매출액이 ₩400,000일 경우 안전한계율은 40%이다.

34. (주)고려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제품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비는 ₩60, 총고정비는 ₩9,000이다. 예상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수량이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증가되는 단위당 이익은 얼마인가?

- ① W40 ② W60
③ W80 ④ W100

35. (주)한국은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관련하여 실제 ₩189,000이 발생하였으며, 작업시간은 2,100시간이었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되며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은 2시간이며, 작업시간당 표준배부율은 ₩100이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의 수량이 1,000개일 때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소비차이와 능률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 ① ₩21,000(유리), ₩10,000(불리) ② ₩21,000(불리), ₩10,000(유리)
③ ₩10,000(유리), ₩21,000(불리) ④ ₩10,000(불리), ₩21,000(유리)

3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정제조간접비의 조업도차이는 얼마인가?

가. 고정제조간접비 실제액 : ₩70,000	나. 기준작업시간 : 8,000시간
다.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액 : ₩80,000	라. 제품생산량 : 1,750개
마.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 : 4시간	

- ① ₩10,000(불리) ② ₩10,000(유리)
③ ₩20,000(불리) ④ ₩0

37. 종합원가계산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한다.
- ②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을 한다.
- ③ 제조간접원가는 전체를 집계하여 일정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율을 계산한다.
- ④ 비료공업, 제분업, 석유화학공업, 의약품 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제당업, 정유업, 직물업, 유리 제조업, 광산업 및 철재 제조업 등에서 많이 이용한다.

가. 9월초 제품재고량 : 500개 나. 9월 제품 생산량 : 4,000개
다. 9월말 제품재고량 : 300개 라. 9월 제품 판매량 : 4,200개

- ①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00 크다.
- ②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00 작다.
- ③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5,000 크다.
- ④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5,000 작다.

활동	제조간접비	원가동인	A제품	B제품	C제품
구매	₩4,000,000	구매횟수	70회	90회	40회
제조	₩5,400,000	부품수	제품당 5개	제품당 7개	제품당 5개
생산량			40,000개	48,000개	2,000개

① ₩20,000 ② ₩18,000
③ ₩15,000 ④ ₩10,000

- ① 모든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복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매출배합은 관련범위 내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③ 총수익과 총비용의 행태는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선형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 ④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조업도 등이 있다.

2012년	2013년
① 익금산입 ₩50,000 유보	손금산입 ₩50,000 △유보
② 손금산입 ₩50,000 △유보	익금산입 ₩50,000 유보
③ 익금산입 ₩55,000 유보	손금산입 ₩55,000 △유보
④ 손금산입 ₩55,000 △유보	익금산입 ₩55,000 유보

46. (주)건우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2012년도에 100,000,000원을 개발비로 지출하고 2013년 7월 15일 신제품 출시 직전까지 50,000,000원을 추가로 개발비로 지출하였다. (주)건우는 개발비에 대한 세무상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사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도 개발비상각비로 50,000,000원을 인식하였다.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손금불산입(익금산입) ₩35,000,000(유보) ② 익금불산입(손금산입) ₩35,000,000(△유보)
 ③ 손금불산입(익금산입) ₩30,000,000(유보) ④ 익금불산입(손금산입) ₩30,000,000(△유보)

4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상공의 세무조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 퇴직급여충당금 회사 설정액	₩1,000,000
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한도액	₩1,200,000

-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산입 ₩200,000
 ③ 손금불산입 ₩200,000 ④ 손금불산입 ₩1,000,000

48. (주)상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000,000
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2,000,000

- ① ₩2,000,000 ② ₩3,000,000
 ③ ₩5,000,000 ④ ₩7,000,000

49. 다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세액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④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내국법인발행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한다.

50. 다음 제시된 자료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 총급여의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가. 임금 ₩2,000,000	나. 상여금 ₩1,000,000
다. 복무 중 병장 급여 총액 ₩1,200,000	라. 자가운전보조금 월 ₩200,000

- ① ₩2,000,000 ② ₩3,000,000
 ③ ₩3,200,000 ④ ₩4,200,000

- ①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④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가. 근로소득금액 : ₩150,000,000 ((주)대한상사의 대표이사임)

나. 2011.7.1 (주)대한상사에 ₩100,000,000을 대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주)대한상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6%임.

다.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 ₩240,000,000 (친구 박상혁씨와 부동산임대업(손익분배비율은 5:5)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총사업소득금액임)

라.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정기예금이자 : ₩10,000,000

- 가. 복권당첨금 : ₩350,000,000
나.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 : ₩5,000,000
다. L대학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수령한 강연료 : ₩8,000,000

① ₩75,570,000 ② ₩71,850,000
③ ₩70,650,000 ④ ₩70,570,000

- 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 ②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 ③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 ④ 중간예납세액이 ₩200,000 미만인 경우

5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가공 식료품은 수입산을 불문하고 면세 대상이나,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농산물은 국산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 ③ 유연탄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무연탄의 공급은 면세된다.
- ④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57. 다음은 (주)대한의 재무책임자와 담당 직원간의 대화이다. 2013년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아래 언급된 대화내용 이외의 매출액과 매입액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가. 재무책임자 : 2013년 10월에 A거래처에 5백만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3백만원이나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2백만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지 않은가?

나. 담당직원 : A거래처는 우량거래처이고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재무책임자 : 2013년 12월에 종업원들에게 선물한 상품 3백만원(시가:4백만원,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받음)은 외부에 판매한 것도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지난 9월에 예정신고 누락된 매입액 6백만원은 이번에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가?

- ① ₩0 ② ₩200,000
③ ₩300,000 ④ ₩800,000

58. 다음 중 거주자 갑의 2013년 1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가. 사업장 A: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 환급 ₩1,000,000

나. 사업장 B: 내수산업 부진으로 인한 환급 ₩1,500,000

다. 사업장 C: 사업설비(사업용 고정자산)의 신설로 인한 환급 ₩2,000,000

- ① ₩1,000,000 ② ₩2,500,000
③ ₩3,000,000 ④ ₩3,500,000

59.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다.
- ②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법정 기한 내에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60.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박검정씨
의 2013년 과세기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박검정씨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시 납부할 차가감 납

가. 1월 1일~6월 30일의 공급대가(VAT포함)	₩15,000,000
나. 7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VAT포함)	12,000,000
다. 1월 1일~6월 30일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액	5,000,000
라. 7월 1일~12월 31일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액	4,000,000
마. 예정부과되어 납부한 세액	300,000

부세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숙박업의 부가가
치율은 20%로 한다)

- | | |
|------------|------------|
| ① ₩493,000 | ② ₩376,000 |
| ③ ₩108,000 | ④ ₩6,000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제3회 모의고사

정답 및 문제풀이 해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제3회 모의고사 정답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④	21	③	41	③
2	③	22	①	42	④
3	④	23	④	43	④
4	③	24	③	44	②
5	①	25	②	45	③
6	④	26	④	46	①
7	④	27	②	47	①
8	①	28	④	48	②
9	②	29	①	49	②
10	②	30	③	50	②
11	②	31	②	51	③
12	②	32	③	52	①
13	③	33	④	53	①
14	③	34	①	54	②
15	③	35	①	55	④
16	②	36	①	56	④
17	①	37	③	57	③
18	④	38	②	58	③
19	①	39	①	59	①
20	②	40	④	60	④

〈제1과목〉 재무회계

1. 다음 재무제표의 의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재무제표는 기업의 거래를 측정, 기록 및 요약하여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이다.
-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결정시 기업의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 ④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요약되어 있으며, 재무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금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등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재무상태표를, 일정기간 재무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자본의 구성항목과 변동내역에 관한 정보는 자본변동표를, 일정기간 기업의 현금원천별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현금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2. 다음 중 시산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준거래가 발생기준에 따라 기록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다.
- ② 완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개략적인 재무성과만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다.
- ③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회계기록에 오류가 없는지를 대차계정 일치의 여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④ 자산 + 비용 = 부채 + 자본으로 정리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시산표(Trial Balance: T/B)는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집계하여 하나의 표로 만든 것으로 계정을 기록한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다.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 비용 = 기말부채 + 기초자본 + 수익”으로 표시된다.

3. 다음은 주석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주석은 추정 불확실성 등의 기타 원천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②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 ③ 주석에는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 ④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이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 ① 주식은 기타 원천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K-IFRS 제1001호 문단 130 참조)
- ② 주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IFRS 제1001호 문단 7 참조)
- ③ 주식에는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K-IFRS 제1001호 문단 126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보기④번) 주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기②번)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126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보기③번)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분류별 회수가능액, 재고 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 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을 할 때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130 이 기준서는 문단 125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보기①번)

4. 다음은 (주)금고의 2013년 말 자산실사 결과자료의 일부이다. 201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은? 단, 아래자료 이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없다.

가. 통화 ₩100	나. 배당금통지표 ₩50	다. 받을어음 ₩150
라. 우표 ₩50	마. 보통예금 ₩250	바. 차용증서 ₩150
사. 지급기일 도래 전 사채이자표 ₩250		
아. 6개월 만기양도성예금증서(2013.8.1 발행, 11.30 취득)		₩150

- ① ₩350 ② ₩400 ③ ₩550 ④ ₩700

풀이) 정답은 ③번 ₩550이다.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100(\text{가. 통화}) + ₩50(\text{나. 배당금통지표}) + ₩250(\text{마. 보통예금}) + ₩150(\text{아. 6개월 만기양도성예금증서})^{※1)}$$

※1) 6개월 만기양도성예금증서를 보면 발행일이 2013년 8월 1일이므로 만기는 6개월 후인 2014년 1월 31일이며, 취득(2013년 11월 30일)일로부터 만기일(2014년 1월 31일)이 3개월(2014년 2월 28일) 이내이므로 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용어의 정의 문단번호 6

- 현금: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
-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문단번호 7

-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다음 중 상공상사의 2013년 12월 31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상공상사는 2012년 4월 1일 주권상장법인인 (주)하나산업의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에 장기보유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주)하나산업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2012년 말 ₩8,300이었고, 2013년 현재 ₩9,200이다. 상공상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 | | | |
|------------------------|----------------------------|--|
| ①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
| ②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90,000 | |
| ③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7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
| ④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70,0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상공상사가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주)하나산업 주식 취득 및 기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12. 4. 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0 (대) 현금 / 예금 등 ₩900,000

2012.12.3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70,000
 ※ (₩8,300 - ₩9,000) × 100주 = ₩70,000 손실

2013.12.3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2021년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 명칭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변경되었으며, ‘만기보유금융자산’ 계정 명칭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변경되었다.

6. 다음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② 원가모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후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④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 발생하는 공정가치변동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최초 인식 후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회계정책

30 문단 32A와 문단 34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문단33~55에 의한 **공정가치모형**과 문단 56에 의한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보기①번)**

공정가치모형

33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보기③번)** 다만, 문단 5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문단 6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문단 30의 평가방법은 선택할 수 없으며 **공정가치모형만** 적용한다.

3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보기④번)**

원가모형

56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며, (보기②번)** 투자부동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투자부동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원가모형

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보기②번)

원가모형	공정가치모형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한다. ② 유형자산처럼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배분 하고 재무제표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으로 표시된다.	① 최초 인식 후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 한다. ②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이 경우 투자부동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7. 다음의 거래와 관련하여 분개를 할 때 거래의 8요소의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건물(장부금액 ₩15,000)을 ₩20,000에 매각하였다.
 나. 청소용역을 제공한 대가 중 ₩20,000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00은 아직 받지 않았다.
 다. 차입금 ₩20,000을 모두 출자전환하였다. 거래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후 즉시 주주에게 현금 ₩20,000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 ① 가. 거래 :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② 나. 거래 :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③ 다. 거래 :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④ 라. 거래 :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가. (차) 현금등(자산의 증가) ₩20,000	(대) 건물(자산의 감소) ₩15,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 (수익의 발생)
나. (차) 현금(자산의 증가) ₩20,000	(대) 매출/영업외수익 ₩30,000
외상매출금/미수금 ₩10,000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다. (차) 차입금(부채의 감소) ₩20,000	(대) 자본금(자본의 증가) ₩20,000
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	(대) 현금(자산의 감소) ₩20,000
(자본의 감소)	

※ 배당 결의 및 배당금 지급일의 회계처리

배당 결의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주주총회일)	(대) 미지급배당금 이익준비금 xxx
배당금 지급일 (차) 미지급배당금 xxx	(주총일로부터 약 1개월)	(대) 보통예금 예수금 xxx (배당소득원천징수)

8.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의 순액

가. 외상매출금	₩1,000,000	나. 받을어음(상품판매)	₩100,000
다. 대여금	200,000	라. 타인발행수표	50,000
마. 장기받을어음	150,000	바.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00,000

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1,000,000 ② ₩1,050,000
 ③ ₩1,200,000 ④ ₩1,250,000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begin{aligned} \text{매출채권(순액)} &= \text{₩1,000,000(가. 외상매출금)} - \text{₩100,000(바. 대손충당금)} \\ &\quad + \text{₩100,000(나. 받을어음)} \\ &= \text{₩1,000,000} \end{aligned}$$

※ 참고 다. 대여금 ₩200,000 (단기대여금-유동자산, 장기대여금-투자자산(비유동자산))
 라. 타인발행수표 ₩50,000: 현금(당좌자산-유동자산)
 마. 장기받을어음 ₩150,000: 기타비유동자산

9. 홍길동은 길목주유소에서 쾌속승용차에 휘발유 55ℓ를 주유하고 ₩70,400(ℓ당 ₩1,280)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가액 : ₩64,000
부가가치세 : ₩6,400
합 계 : ₩70,400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가액에는 ℓ당 ₩630의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중 길목주유소의 유동부채계정으로 기록되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유류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는 주유소가 일정기간마다 모아서 과세당국에 납부한다고 가정한다.

- ① ₩64,000 ② ₩41,050
 ③ ₩29,350 ④ ₩6,400

풀이) 골목주유소 유동부채계정(예수금)에 기록될 금액은 ₩41,050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길목주유소가 판매한 합계금액 ₩70,400 가운데 문제에서 주어진 부가가치세 ₩6,400과 특별소비세 ₩34,650(=₩630×55ℓ)의 합계액인 ₩41,050은 예수금(유동부채)에 해당하며, 골목주유소의 매출액은 ₩29,350(총거래금액 ₩70,400 - 예수금 ₩41,050)이 된다.

※ VAT 과세물품가액 ₩64,000 가운데는 특별소비세 ₩34,650(=₩630×55ℓ)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6,400과의 합계액인 ₩41,050이 유동부채(예수금)로 기록된다.

10. 회사의 상품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가. 기초재고	₩80,000	나. 당기매입	₩600,000
다. 매입부대원가	₩19,000	라. 판매관련 보관료	₩1,000
마. 매입할인	₩2,000	바. 매입환출	₩15,000
사. 기말재고	₩85,000		

- ① ₩596,000
 ② ₩597,000
 ③ ₩598,000
 ④ ₩599,000

풀이) 상품의 매출원가는 ②번 ₩597,000이다.

$$\begin{aligned}\text{상품매출원가} &= ₩80,000(\text{기초재고}) + ₩602,000(\text{당기순매입액}^{\ast 1}) - ₩85,000(\text{기말재고액}) \\ &= ₩597,000\end{aligned}$$

$$\begin{aligned}\ast 1) \text{ 당기순매입액} &= ₩600,000(\text{당기매입}) + ₩19,000(\text{매입부대원가}) - ₩15,000(\text{매입환출}) \\ &\quad - ₩2,000(\text{매입할인}) \\ &= ₩602,000\end{aligned}$$

11. 유형자산의 차입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 ②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당해 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 ③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의 경우에는,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 ④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발생한 당해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문단번호 9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인식

-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보기①번)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기②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21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차입원가에 인식된다.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적지출 금액을 재작성하면서 동시에 차입원가 중 동일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을 자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입원가 중 이러한 부분은 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기②번)

자본화가능차입원가

-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 11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연결실체 차원에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차입한 후 연결실체 내 기업들에게 당해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화표시 또는 외화연계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연결실체가 초인플레이션 발생국가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심한 환율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판단이 요구된다.
-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보기③번)
-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보기④번)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12.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해야 한다.
- ②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해야 한다.
- ③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해야 한다.
- ④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나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풀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07 참조)

보기④번: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①피취득기업과 분리될 수 없고, ②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진 자산으로, 계속기업을 가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07에 따라 상각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식별가능성

- 11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③번)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재무제표 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보기③번)

-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8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문단 97~106 참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 107~110 참조).

91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한다. (생략)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보기①번)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10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보기④번)

10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기④번)

- (1) 매년
-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장부금액의 회수가가능성 - 손상차손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보기④번)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연차 회계기간 (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보기④번)

※ 참고: 영업권 상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vs.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 발생시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다만,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환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발생시 손상차손을 인식하되,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환입할 수 없습니다. (K-IFRS 제1038호 문단 107, 111 참조)

13. 다음 중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
- ②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 ③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④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만기금액(액면금액)의 현재가치와 만기까지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14.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에 의해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자기주식 계정에 기록한다.
- ③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 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 ④ 자기주식은 자본계정에 보고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 계정의 대변이 아닌 차변에 기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자기주식(문단 AG36 참조)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보기①번, 보기②번))은 자본에서 차감한다.(보기③번, 보기④번)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34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주식에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특수 관계자에게서 재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 관계자 공시'에 따라 공시한다.

자기주식(문단 33과 34)

AG36 자기지분상품은 취득한 이유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문단 33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보기④번) 그러나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다음은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은 전일제나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의 종업원은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한다.
- ②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 ③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명목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 ④ 해고급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 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으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급여채무 명목가치의 증가액이 아닌 현재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K-IFRS 제1019호 용어의 정의 참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적용범위

7 종업원은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종업원에 포함한다. (보기①번)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의 정의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보기②번)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 (1)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 (2)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보기④번)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보기㉓번)
- (2)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철회·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16. 2012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200,000이고 2013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000인 경우 2013년도 법인세비용이 ₩1,000,000일 때 미지급법인세는 얼마인가?

- ① ₩1,000,000 ② ₩900,000
③ ₩800,000 ④ ₩700,000

풀이) 2013년도 미지급법인세는 ₩900,000으로 정답은 ②번이다.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을 보면 2012년 기말(2013년 기초) ₩200,000에서 2013년 기말 ₩100,000으로 당기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000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기말 법인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2013년 말 (차) 법인세비용	₩1,000,000	(대) 이연법인세자산 ^{※1)}	₩100,000
		미지급 법인세	900,000

※1)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2012년 말) - ₩100,000(2013년 말) = ₩100,000 감소

17. 다음 전기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것도 오류수정의 예이다.
- ②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중요한 전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전기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풀이) 기존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보기②번)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 (2)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보기①번)

14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5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추이를 알기 위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문단 14에서 제시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기간 내에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오류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보기③번)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소급재작성의 한계

43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4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음).

4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보기④번)

18. 다음 중 현금흐름표 작성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 ① 유상증자 ② 장기차입금의 차입**
- ③ 자기주식의 처분 ④ 토지의 구입**

34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기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결론

- 3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그 성격, 형식 또는 지급시점과 관계없이 리스자산의 사용을 위하여 합의된 순대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 4 리스자산 효익의 기간적 감소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제공자는 인센티브의 총원가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한다.
- 5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인센티브의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한다.
- 6 기존의 리스와 관련된 원가(예: 해지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자산개량원가)를 포함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해당 원가(인센티브 약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원가 포함)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2과목〉 원가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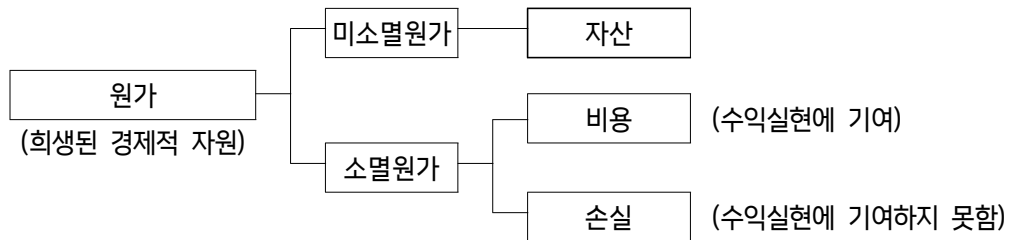
21.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가(cost)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희생을 화폐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 ② 소멸된 원가 중에서 수익 실현에 기여한 부분을 비용(expense)이라고 한다.
- ③ 원가 중에서 미소멸된 부분을 이익(earning)이라고 한다.
- ④ 소멸된 원가 중에서 수익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을 손실(loss)이라고 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원가 중에서 미소멸된 부분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원가를 말하며, 재무상태표에 자산(asset)으로 표시된다.

경제적 효익의 소멸여부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로 나뉘며, 원가 중에서 소멸된 원가로서 수익 실현에 기여한 부분을 비용이라 하고,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비된 것은 손실(차손)이라 하며, 미소멸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자산이라 한다.

※ 참고: 원가회계에서 보는 원가·자산·비용·손실의 개념



22.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원가추정 시 비정상성 문제(nonstationary problem)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발생주의기준
- ② 비효율적인 영업활동
- ③ 제조상 중요한 기술적 변화
- ④ 경험과 학습효과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발생주의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말하며, 원가 추정시 비정상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대응하여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취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참고: 학습효과(learning effects)란 동일한 작업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경험축적 등으로 숙련도가 높아지거나 생산설비의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작업시간이 감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학습효과는 노동시간과 관련있는 원가항목(DL, VOH)에서 주로 발생한다.

24. 다음 중 재료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재료 계정은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료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당기에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차변에 기입한다.
- ② 원재료 계정은 제조활동에 사용될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동시에 기록하는 계정이다.
- ③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소비액은 기초재고액에서 당기 매입액을 차감하고 기말재고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④ 기업에 따라서는 원재료계정을 직접재료는 직접재료계정에 기록하고, 간접재료는 소모품 등 별도의 계정에 각각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소비액은 기초재고액에서 당기매입액을 차감하고 기말재고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원재료(재료비)의 원가흐름은 아래와 같다.

원재료			재공품			
기초원재료재고액	xx	원재료사용(소비)액	기초재공품원가	xx	당기완성	xx
		직접재료원가 xx	⇒	직접재료원가 xx		
		간접재료원가 xx		직접노무원가 xx		
당기매입액	xx	기말원재료재고액 xx	제조간접원가 xx		기말재공품원가	xx

25. 공장 제조간접원가가 과대배부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 ① 공장이 평준화조업도(normal capacity)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업하였다.
- ② 공장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생산제품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보다 낮았다.
- ③ 공장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생산제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 ④ 공장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생산제품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보다 높았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와 달리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할 수 없어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율(제조간접원가 ÷ 조업도)을 계산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한다.

이 때 공장 제조간접원가가 과대배부 되었다는 것은 ②번과 같이 공장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보다 배부된 제조간접원가가 더 크다(=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보다 작다)는 의미이다. ④번은 과소배부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과소배부차이	과대배부차이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제조간접원가 차변잔액	제조간접원가 대변잔액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계정잔액에 가산 조정	계정잔액에 차감 조정
원가증가효과, 이익감소 효과	원가감소효과, 이익증가 효과

26. 다음은 원가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문별배부율법이 공장전체배부율법보다 좀 더 정확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 ② 배부기준의 선정시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배부기준과 발생원가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이중배부율법에서 고정비는 실제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이중배부율법에서 보조부문의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원가는 용역을 최대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아닌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7. 다음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재료비는 각 개별작업별로 추적한다.
- ② 직접노무비는 공장전체로 집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③ 제조간접원가는 전체를 집계하여 일정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율을 계산한다.
- ④ 계산된 배부율에 각 작업별 배부기준을 곱하여 제조간접비를 계산한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개별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각 개별 작업별로 집계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반면, 제조간접원가는 발생액을 집계하여 공장 전체 또는 부문별 배부율에 따라 배부한다.

※ 개별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은 각 작업별 독립적으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우선 작업이 설정되어야 하고, 작업이 설정되면 작업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한다.

- 1. 직접원가의 집계: 작업별로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파악하여 각 작업별로 집계한다.
- 2. 제조간접원가의 배분: 작업별로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원가는 제조간접원가계정에 집계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개별작업별로 배부한다.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직접노무원가를 주로 사용하는데,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제조간접원가와 상관관계가 높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 배부기준을 선택한다.

28. 다음 원가배부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인과관계기준: 원가발생을 유발한 원인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가장 이상적인 원가배부기준이다.
- ② 공정성기준: 원가의 배부에는 공정성 또는 공평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공정성의 평가에 의견의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③ 부담능력기준: 원가배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성과평가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수혜기준: 원가배부대상이 제공받는 수혜정도(경제적 효용)에 따라 원가가 배부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매출액기준에 따른 원가배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풀이) ④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하는 경우는 부담능력기준의 대표적인 예이다.

※ 원가배부기준

- | | |
|--------------------|---|
| (1) 인과관계기준 | 원가 발생 결과와 원인을 확인하여 인과관계에 의해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원가배부 기준이다. |
| (2) 수혜기준(수익자 부담기준) | 원가발생으로 원가대상이 경제적효익을 얻는 경우 제공받는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대상에 배부하는 기준이다. |
| (3) 부담능력기준 |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대상에 배부하는 기준이다. 부담능력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업부에 더 많은 원가가 배부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에 적은 원가가 배부되어 성과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
| (4) 공정성과 공평성기준 | 원가를 원가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별원가계산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된다.
 ② 개별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③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④ 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업종은 정유업, 화학공업 등이 주로 적용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②~④번은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 개별원가계산 vs. 종합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구분	종합원가계산
다품종 소량생산(주문생산) (보기①번) (조선업, 항공기산업, 건설업 등) (④번)	생산형태	동종제품의 대량·연속생산 (정유업, 화학업, 철강제조업 등) (④번)
개별작업별로 원가집계	원가집계	제조공정별로 원가집계
작업원가표	원가계산자료	제조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원가보고서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가능성 중시 - 직접원가(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 간접원가(제조간접원가)	원가구분 (보기③번)	원가투입형태를 중시 - 재료비(직접재료원가) - 가공비(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 직접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 · 제조간접원가는 배부율을 이용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	원가계산방법	완성품환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인위적으로 배부 (보기②번)
제조간접원가 배부	핵심사항	완성품환산량 계산
·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음 · 작업원가표에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므로 관리노력과 비용이 크게 발생	기타	·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낮음 ·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관리노력과 비용이 적게 발생

31. 다음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불량, 작업 기술의 미숙 등의 원인으로 표준규격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를 ()이라 하며, 증발 등으로 산출물이 되지 못한 투입물로서, 공정이 진행되면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라 한다.

- ① 감손 - 공손 ② 공손 - 감손
③ 파손 - 작업폐물 ④ 감손 - 작업폐물

풀이) ② 공손과 감손에 대한 설명이다.

- (1) **작업폐물**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로서, 매각 가치나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제제업의 톱밥이나 기계제조업의 쇳조각, 쇳가루 등이 작업폐물에 해당한다.
- (2) **감손 및 감손품**
감손이란 제조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인해 제품화되지 못하고 투입된 원재료 물량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감손품은 실체가 없으므로 판매가치가 전혀 없다.
- (3) **재작업품**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이라는 점에서 공손품과 같으나, 공손품 가운데 재작업을 거쳐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손품과 차이가 있다.
- (4) **공손(품)**
공손(품)이란 제조,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정상품에 비해 표준규격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으로, 불합격품 상태로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말한다.

32. (주)대한의 제16기 영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제16기 중 고정비는 얼마인가?

가. 매출액 : ₩1,500,000 나. 제품단위당 판매가격 : ₩200
다. 변동비율 : 80% 라. 법인세율 : 20%
마. 당기순이익 : ₩100,000

- ① ₩200,000 ② ₩185,000
③ ₩175,000 ④ ₩160,000

풀이) 제시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고정비는 ③ ₩175,000이 된다.

- (1) 변동비율이 80%이므로 공헌이익률은 20%
- (2) 법인세율이 20%이고 당기순이익(세후이익)이 ₩100,000이므로 세전이익은 ₩125,000^{※1)}
※1) 세후이익 = 세전이익 × (1-법인세율)이므로 세전이익 = 세후이익/(1-법인세율)
- (3) 세전(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 = {세전(목표)이익+고정원가} / 공헌이익률이므로
₩1,500,000 = (₩125,000 + 고정비) / 0.2(공헌이익률)
- (4) 따라서 고정비는 ₩175,000이 된다.

※ 별해

- (1) 세후목표이익 매출액 = {(세후목표이익) ÷ (1 - 법인세율) + 고정비} ÷ 공헌이익률
 $\text{₩1,500,000} = \{\text{₩100,000} \div (1 - 0.2) + \text{고정비}\} \div 0.2(\text{공헌이익률})$
- (2) 따라서 고정비는 ₩175,000이 된다.

33.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50,000이며, 고정비는 ₩50,000이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계산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헌이익률은 20%이다.
- ② 단위당 변동비가 ₩10이라면 단위당 판매가격은 ₩12.5이다.
- ③ 총 30,000단위가 판매(단위당 판매가격 ₩12.5 가정)되었을 때 안전한계는 ₩125,000이다.
- ④ 매출액이 ₩400,000일 경우 안전한계율은 40%이다.

풀이) 매출액이 ₩400,000일 때 안전한계율은 37.5%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250,000) = 고정비(₩50,000) ÷ 공헌이익률이므로

- ① 공헌이익률은 20% ($\text{₩}50,000 \div \text{₩}250,000$)이다.
 - ② 단위당 변동비가 ₩10이라면 공헌이익률이 20%이므로, 변동비율은 80%가 되고, 단위당 판매단가는 ₩12.5 (= $\text{₩}10 \div 8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2.5이다)
 - ③ 총 30,000단위가 판매되었을 때 실제매출액(①)은 ₩375,000이고 손익분기매출액(②)은 ₩250,000이므로 안전한계(①-②)는 ₩125,000이 된다.
 - ④ 안전한계율은 $\{1 - (\text{손익분기점 매출액} \div \text{매출액})\}$ 이므로 37.5%^{※1)}가 된다.
- ※1) $\{1 - (\text{₩}250,000 \div \text{₩}400,000)\}$

34. (주)고려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제품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비는 ₩60, 총고정비는 ₩9,000이다. 예상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수량이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증가되는 단위당 이익은 얼마인가?

- ☒ W40 ☐ W60
☒ W80 ☐ W100

풀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수량이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증가되는 단위당 이익이 곧 단위당 공헌이익이므로 ① ₩40이 된다.

※ 참고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100 - 단위당 변동비 ₩60) = @₩40

$$\begin{aligned} \text{단위당 공헌이익률} &= (\text{단위당 판매가격 ₩100} - \text{단위당 변동비 ₩60}) \div \text{단위당 판매가격 ₩100} \\ &= 40\% \end{aligned}$$

35. (주)한국은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관련하여 실제 ₩189,000이 발생하였으며, 작업시간은 2,100시간이었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되며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은 2시간이며, 작업시간당 표준배부율은 ₩100이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의 수량이 1,000개일 때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소비차이와 능력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 ① ₩21,000(유리), ₩10,000(불리) ② ₩21,000(불리), ₩10,000(유리)
③ ₩10,000(유리), ₩21,000(불리) ④ ₩10,000(불리), ₩21,000(유리)

풀이)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와 능률차이는 ① ₩21,000(유리), ₩10,000(불리)이다.

실제원가 (AQ×AP)	변동예산 (AQ×SP)	표준배부액 (SQ×SP)
₩189,000	₩210,000 (2,100시간×₩100)	1,000개×2시간×₩100 ₩200,000
배부차이(총차이) ₩11,000유리		
소비차이 ₩21,000유리 (₩189,000 - ₩210,000)	능률차이 ₩10,000불리 (₩210,000 - ₩200,000)	

3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정제조간접비의 조업도차이는 얼마인가?

가. 고정제조간접비 실제액 : ₩70,000 나. 기준작업시간 : 8,000시간
 다.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액 : ₩80,000 라. 제품생산량 : 1,750개
 마.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 : 4시간

- ① ₩10,000(불리) ② ₩10,000(유리)
 ③ ₩20,000(불리) ④ ₩0

풀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① ₩10,000(불리)이다.

실제원가	변동예산 (기준조업도×SP)	표준배부액 (SQ×SP)
₩70,000	₩80,000 (8,000시간×₩10)	1,750개×4시간×₩10 ₩70,000
배부차이(총차이) 없음		
예산(소비)차이 ₩10,000유리	조업도차이 ₩10,000불리	

37. 종합원가계산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한다.
 ②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을 한다.
 ③ 제조간접원가는 전체를 집계하여 일정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율을 계산한다.
 ④ 비료공업, 제분업, 석유화학공업, 의약품 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제당업, 정유업, 직물업, 유리 제조업, 광산업 및 철재 제조업 등에서 많이 이용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①, ②, ④번은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인 반면,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여 일정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율을 계산하는 ③번은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 개별원가계산 vs. 종합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구분	종합원가계산
다품종 소량생산(주문생산) (조선업, 항공기산업, 건설업 등)	생산형태	동종제품의 대량·연속생산 (보기①,④번) (정유업, 화학업, 철강제조업 등)
개별 작업별로 원가집계	원가집계	제조공정별로 원가집계
작업원가표	원가계산자료	제조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원가보고서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가능성 중시 - 직접원가(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 간접원가(제조간접원가)	원가구분	원가투입형태를 중시 (보기②번) - 재료비(직접재료원가) - 가공비(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 직접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 · 제조간접원가는 배부율을 이용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 (보기③번)	원가계산방법	완성품환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인위적으로 배부
제조간접원가 배부	핵심사항	완성품환산량 계산
·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음 · 작업원가표에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므로 관리노력과 관리비용이 크게 발생	기타	·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낮음 ·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관리노력과 관리비용이 적게 발생

38. 다음은 (주)대한의 9월
중 제품에 대한 자료이다.
전월과 9월의 제품단위당

가. 9월초 제품재고량 : 500개 나. 9월 제품 생산량 : 4,000개
다. 9월말 제품재고량 : 300개 라. 9월 제품 판매량 : 4,200개

고정제조간접비가 동일하게 ₩50이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00 크다.
②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00 작다.
③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5,000 크다.
④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5,000 작다.

풀이) ②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크므로 변동원가계산 이익이 전부원가계산보다 ₩10,000 크다.
생산량 < 판매량이므로 변동원가계산하의 이익이 전부원가계산하의 이익보다 크다.

(=전부원가계산하의 이익이 변동원가계산하의 이익보다 적다.)

(4,000단위(생산량) - 4,200단위(판매량)) × ₩50 = -₩10,000 (전부원가 < 변동원가)

(300단위(기말재고) - 500단위(기초재고)) × ₩50 = -₩10,000 (전부원가 < 변동원가)

※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차이 조정

전부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말제품재고량 - 기초제품재고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재고자산 증감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제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하거나 당초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 ③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세액 등이 과소신고 되었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였더라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풀이) ③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기③번)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보기②번)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보기②번)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보기①번)
- ②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기④번)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2.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②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③ 국세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④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풀이) 정답은 ④번. 납세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64조의 2와 같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보기②번)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보기①번)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보기③번)

43. 다음은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 ② 내국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내국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풀이) ④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조직변경, 청산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이 없다. (법인세법 제8조 참조)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보기①번)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보기③번)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보기①번)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보기②번)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 나.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 다.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지급이자} = \frac{\text{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text{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5. 2012년 금화건설(주)는 광고(주)와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고 ₩1,1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맺고 공

	2012년	2012년
가. 실제 발생 공사비용(누계)	₩150,000	₩360,000
나. 추가로 소요될 추정 공사비용	₩450,000	₩240,000
다. 각 회계연도 회계상 공사수익계상액	₩220,000	₩440,000

사를 진행하여 왔다. 2013년까지 이와 관련한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2년과 2013년 필요한 세무조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2012년 | 2013년 |
|--------------------------|-------------------------|
| ① 익금산입 ₩50,000 유보 | 손금산입 ₩50,000 △유보 |
| ② 손금산입 ₩50,000 △유보 | 익금산입 ₩50,000 유보 |
| ③ 익금산입 ₩55,000 유보 | 손금산입 ₩55,000 △유보 |
| ④ 손금산입 ₩55,000 △유보 | 익금산입 ₩55,000 유보 |

풀이)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답은 ③번이다.

구 분	회계상 공사수익	법인세법상 익금	세무조정
2012년 귀속	₩220,000	₩275,000	익금산입 ₩55,000 유보
2013년 귀속	₩440,000	₩385,000	익금불산입 ₩55,000 △유보

$$2012년 = \frac{₩1,100,000}{(도급금액)} \times \frac{₩150,000}{₩600,000} - 0 = ₩275,000$$

$$2013년 = \frac{₩1,100,000}{(도급금액)} \times \frac{₩360,000}{₩600,000} - ₩275,000 = ₩385,000$$

※1) 2012년 총공사예정비 = ₩150,000(실제 발생 공사비용) + ₩450,000(추가 소요 추정 공사비용)

※2) 2013년 총공사예정비 = ₩360,000(실제 발생 공사비용) + ₩240,000(추가 소요 추정 공사비용)

46. (주)건우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2012년도에 100,000,000원을 개발비로 지출하고 2013년 7월 15일 신제품 출시 직전까지 50,000,000원을 추가로 개발비로 지출하였다. (주)건우는 개발비에 대한 세무상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사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도 개발비상각비로 50,000,000원을 인식하였다.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손금불산입(익금산입) ₩35,000,000(유보)** ② 익금불산입(손금산입) ₩35,000,000(△유보)
 ③ 손금불산입(익금산입) ₩30,000,000(유보) ④ 익금불산입(손금산입) ₩30,000,000(△유보)

풀이) 법인이 무형자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연수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 참조)

(1) 회사 계상 무형자산 상각비 ₩50,000,000

(2) 세법상 무형자산 상각범위액: (₩100,000,000 + ₩50,000,000) × 1/5 × 6/12
 = ₩15,000,000

(3) 세무조정: (1) - (2) = ₩35,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

48. (주)상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000,000

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2,000,000

- ① ₩2,000,000 ② ₩3,000,000
- ③ ₩5,000,000 ④ ₩7,000,000

풀이) (주)상공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②번 ₩3,000,000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000,000

- 이월결손금 0

- 비과세소득 2,000,000

- 소득공제 0

$$= \underline{\text{W}3,000,000}$$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나.)**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49. 다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세액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 ② 비거주자는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 ④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내국법인발행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한다.

풀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질 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다만 ①번 거주자의 판정 기준(제1조의2 제1항 제1호)이 기존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2014년까지)에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2014년 말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보기②번)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2015년 세법)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이하 생략)

◇ 주요개정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2015년 세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법률 제12153호, 2014.1.1.) (2014년 세법)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51. 다음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④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풀이) ③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보기①번)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보기③번))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보기②번)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보기④번)

가. 근로소득금액 : ₩150,000,000 ((주)대한상사의 대표이사임)

나. 2011.7.1 (주)대한상사에 ₩100,000,000을 대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주)대한상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6%임.

다.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 ₩240,000,000 (친구 박상혁씨와 부동산임대업(손익분배비율은 5:5)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총사업소득금액임)

라.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정기예금이자 : ₩10,000,000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 지체상금

※참고 : 2021년 소득세법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54.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 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 ②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 ③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 ④ 중간예납세액이 ₩200,000 미만인 경우

풀이) ②번을 제외하고는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6조)

소득세법 제86조(소득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이자소득은 제외한다(보기②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보기①번)
2.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보기③번)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보기④번)

55. 다음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③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의 확인을 위해 교부기간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보기①번)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보기④번)
- ② ~ ⑨ (생략)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 ③ (생략)
-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보기④번)
-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보기③번)

-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보기②번)

5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가공 식료품은 수입산을 불문하고 면세 대상이나,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농산물은 국산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 유연탄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무연탄의 공급은 면세된다.
④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풀이) ④ 도서의 공급뿐만 아니라 도서대여 용역도 면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8호) 연탄과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번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5년 세법)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기①번)
 3. 연탄과 무연탄 (보기③번)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보기④번),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2015년 세법)

-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보기②번)
-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5년 세법)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8. 다음 중 거주자 갑의 2013년 1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가. 사업장 A: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 환급 ₩1,000,000

나. 사업장 B: 내수산업 부진으로 인한 환급 ₩1,500,000

다. 사업장 C: 사업설비(사업용 고정자산)의 신설로 인한 환급 ₩2,000,000

① ₩1,000,000

② ₩2,500,000

③ ₩3,000,000

④ ₩3,500,000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조기환급은 수출로 인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장 A의 1,000,000”과 사업설비(사업용 고정자산)의 신설로 인한 환급 대상인 “사업장 C의 ₩2,000,000”의 합계 금액인 ₩3,000,000이며, 사업장 B의 환급세액은 일반환급 대상이다.

※ 참고: 3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4월에 환급 신고하는 경우

(1)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인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신고기한(4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인 5월 10일까지 환급된다.

(2) 일반환급의 경우 4월 25일 환급으로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21번)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표기하여 신고하면,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환급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2015년 세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가.)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2015년 세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59.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다.
- ②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법정 기한 내에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2015년 세법)

① (생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기②번)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보기③번)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보기①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15년 세법)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⑨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다. (보기①번)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보기④번)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text{납부세액} = \text{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times \text{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times 10\text{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마)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3회 모의고사 문제 및 풀이 해설서

(비매품)

-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 있으며, 풀이해설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더존비즈온에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허가를 받아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이용과 출판인쇄 및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존지식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DOUZONE

